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21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2021. 1. 29.자 영업양도 · 양수계약은 93,340,2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3,34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4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577호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2. 8. 'D는 원고에게 93,34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3. 1. 확정되었다.

나. D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시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업권(거래처 등)을 2021. 1. 29.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위 영업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3,340,272원의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3,34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21. 1. 29.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D의 상호도 속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93,340,272원을 D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3.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영업에 중요한 자료들과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던 물적인적 재산이 피고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가 D와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D로부터 자산부채 등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D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의 사업장은 충북 음성군 G이고, D의 사업장은 충북 음성군 H인바, 위 두 회사는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또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D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인바, 위 두 회사는 상호도 서로 다르다.

라.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F, 사내이사 C이 있고, D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E, 사내이사 I, J, 감사 K이 있는바, 위 두 회사는 임원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마. D가 피고에게 그 중요한 재산인 거래처 등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D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바. D가 2021. 1. 29. 이후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D의 일부 거래처들이 2020년 12월경 피고와 새로이 거래를 하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가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